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4. 3.24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소속의 교육관련 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교(부속기관·부속시설 포함)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.
- 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본교 사무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시설 재난업무 담당과장(시설과장)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- 1. 위촉 위원 :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, 건축사, 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설비전문가 또는 전산전문가
 - 2. 당연직 위원 : 사무국장, 교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 기획평가과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시설과장, 제1행정실장 및 제4행정실장

- 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간사는 교육시설 재난 업무 담당(시설관리팀장)이 된다.
- 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제5조(심의사항 및 의결사항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재난위험시설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· 보강, 철거 등에 관한 사항
 - 3.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
 - ② 총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제1항 각 호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,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- 제6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7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239호, 2014. 3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재난위험시설 심의 요구서

- 1. 기 관 명 :
- 2. 소 재 지 :
- 3. 대상시설물 현황

시설명	구 조	규 모	건축년도	비고

4. 점검내용

점검방법	일 시	점검내용	조치사항	재난위험 시설등급	비고

- 5. 수업대책
- 6. 요구자 의견

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.

붙임 1. 사진(전경 및 위험구간의 상세부분)

2. 배치도

년 월 일

000 학장 (인)

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재난위험시설 심의 의결서

- 1. 기 관 명 :
- 2. 소 재 지 :
- 3. 대상시설물 현황

시설명	구 조	규 모	건축년도	비고

4.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심의 결정

구	분	심의요청	심의결정	비고
재난위험시설의 지정	C급			
	D급			
	E급			
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내용	철거			
	보수·보강			
기타사항				

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위원장 (인)